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금융투자소득 지방소득세 특별장수 선택 허용 및 예정신고 폐지〉

■ 차규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025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개정안의 검토	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차규근의원 등 12인
2. 제안연월일 : 2024. 10. 30.
3. 회부연월일 : 2024. 10.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제도 일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그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복리투자 기회가 박탈된다는 합리적인 우려를 반영해 최초 일본이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시행할 당시 원천징수와 자진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제도를 개선해 선택의 폭을 넓혀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납부를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2조의6 삭제 등).

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배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안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13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50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사전 특별징수를 납세의무자가 선택(배제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예정신고 규정은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의6 삭제 등).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2조의6(예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7조의21¹⁾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 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삭 제>

현 행	개 정 안
1. 제102조의5²⁾에 따른 공제세액 및 감면세액 2. 제98조³⁾ 및 제102조의8⁴⁾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제102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⁵⁾ ① · ② (생략) ③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02조의5에 따른 공제세액 및 감면세액 2. 제102조의6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제97조 및 제102조의8에 따라 결정·경정한 세액 3. 제98조 및 제102조의8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03조의13에 따른 특별징수세액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⁶⁾ ① ~ ③ (생략) ④ 「소득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사람이 「소득세법」 제148조의2 제5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배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02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1. (현행과 같음) 2. 제97조----- -----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사람----- ----- ----- ----- ----- ----- -----.

현행	개정안
⑤ · ⑥ (생략)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가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소득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한 후 신고는 제외한다)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한 내로 한다. 가. (생략) 나.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87조의23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같은 법 제87조의21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의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다. (생략) 2. ~ 5. (생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① ----- ----- ----- ----- ----- ----- -----. 1. ----- -----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 매매차익예정신고----- ----- ----- ----- ----- 다. (현행과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소득세법」

제87조의21(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예정 신고 대상소득”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자는 제87조의7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아니한 금융투자소득
 2.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금융투자소득 중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
 3. 제87조의2제3호가목에 따른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소득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지급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까지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 장에서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라 한다.

2) 「지방세법」

제102조의5(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 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 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제98조(수시부과결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1.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개인지방소득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수시부과사유가 제95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거주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시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지방세법」

제102조의8(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징수·환급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지방세법」

제102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7조의23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② 「소득세법」 제87조의23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6)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다.

1.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2.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반기 중에 계좌가 해지된 경우에는 그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89조제3항제2호·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에 따라 납부한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감으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특별징수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급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 「지방세법」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소득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한 후 신고는 제외한다)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한 내로 한다.

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퇴직소득과세표준,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 같은 법 제87조의4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또는 같은 법 제92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 방식으로 신고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즉시

나.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87조의23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같은 법 제87조의21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의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3.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받은 경우: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제4호에 따른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받은 원천징수세액에 관하여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4.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를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등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5.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87조의23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② 세무서장등은 법인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또는 수정신고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2.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3.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받은 경우: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제4호에 따른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받은 원천징수세액에 관하여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4.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등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5.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한 경우: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에 따라 동업기업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5호 또는 제2항제5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세기본법」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3항에 따른 환급의 경우(「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소멸시효는 이 조 제1항제5호 또는 제2항제5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2. 개정안의 검토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새로운 과세 체계로서, 주식·채권·파생상품·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기본공제 및 손실을 상제한 순이익을 산출하여 20~25%의 세율로 분류과세(종합소득과 별도 과세)하는 국세 세목임.

[금융투자소득세 개요]

구 분	내 용
과세방법	• 분류과세(종합과세와 별도의 과세체계)
과세대상	•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포괄적 과세 - 주식등, 채권등,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양도로 발생하는 이익,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등
과세표준	• 금융투자소득액 - 기본공제 - 금융투자 이월결손금(이월공제 5년 허용)
손익통산	• 금융투자소득으로부터의 손익 및 손실 간 상계 허용
기본공제	• (국내 상장주식 등) 5천만원 • (그 외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250만원
세율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25%
신고·납부	• 금융회사가 반기별 원천징수, 납세자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납부 또는 세액 환급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2024.10., p.38.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소득세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는 해당 금융회사가 반기별(매년 1월·7월)로 원천징수하고,⁸⁾ 나머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소득을 지급받은 다음 다음달 말까지 예정신고·납부⁹⁾한 후, 최종적으로 차년도 5월에 확정

8) 「소득세법」

제148조의2(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이라 한다) 중 관리하는 모든 계좌에 대하여 금융투자소득 금액을 계좌보유자별로 합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보유자별 금융투자소득 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반기
2. 반기 중 계좌를 해지한 경우 반기 시작일부터 계좌해지일까지

신고¹⁰⁾를 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2단계 납부구조인데,

개정안은 이 중 원천징수는 납세의무자가 선택(배제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예정신고는 폐지하는 「의안번호 22050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에 연동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¹¹⁾를 납세의무자가 (배제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예정신고는 폐지하려는 것임.

9) 「소득세법」

제87조의21(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예정신고 대상소득”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자는 제87조의7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아니한 금융투자소득
2.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금융투자소득 중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
3. 제87조의2제3호가목에 따른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지급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10) 「소득세법」

제87조의23(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금융투자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7조의24(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대한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87조의23제1항의 기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11) 지방세관계법에서 원천징수와 유사하게 기능하는 제도로써 징수권자가 아닌 징수가 용이한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게 하는 제도임.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금융투자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함.

「소득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다.

1.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2.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반기 중에 계좌가 해지된 경우에는 그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원천징수 및 예정신고 제도는 세수를 사전에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과세당국에는 유리한 반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조세가 조기 납부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불리한 제도일 수 있으며,

특히,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에는 ① 신설 세목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심리적 저항이 있는 상황에서 원천징수·예정신고를 통한 조기 납세와 원천징수금액의 확보를 위하여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소득 인출 제한 제도¹²⁾ 등이 이러한 저항을 가중시켜 투자자의 국내금융시장 이탈을 초래할 수 있고, ② 원천징수를 위한 금융회사등의 사전준비가 완료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는 점¹³⁾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금융투자소득세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폐지하려는 법률안을 정부 등이 제안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황이므로,

[제22대 국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률안 현황]

구분	의안번호	제안자	주요내용	소관상임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389	박대출의원 등 108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기재위
	2203518	정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685	박대출의원 등 14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폐지	행안위

12) 「소득세법」

제148조의2(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③ 금융회사등은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에 각 계좌보유자별로 금융투자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적 관리하여야 하며, 계좌보유자별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기간 중 인출을 제한할 수 있다.

13) 뉴시스, 「국세청장 "내년 금투세 시행,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2024.10.16.

금융투자소득세 등의 폐지 여부를 지켜보며 동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33